

패키지(Package) 보험(下)

<목 차>	
1. 머리말	가.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담보
2. 약관의 담보체계	나. 제2부문 기계위험담보
3. 약관의 구성	다.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담보
가. 전체적 구성	라.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담보
나. 공통적용조항 개요	5. 특별약관
4. 부문별 담보위험	6. 요율

다.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담보 (Section III. Business Interruption Cover)

(1) 개요

기업휴지위험담보는 재산종합위험담보 또는 기계위험담보 부문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피해시설을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할 때까지 입은 간접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동 보험은 간접손실 또는 결과적 손실을 담보하는 점에서 직접 손해를 담보하는 재산종합위험담보 또는 기계위험담보와는 구별되지만 약관제도상 기업휴지보험은 직접 손해를 담보하는 재산종합위험이나 기계위험담보와 함께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휴지위험담보 형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와 그에 따른



기업휴지위험담보, 기계위험담보와 그에 따른 기업휴지위험담보 및 이들을 모두 가입하는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2)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대상인 순이익+부보 고정비 (계속 비용)가 보험가입금액이다.

$$\text{보험가입금액} = \text{순이익} + \text{부보 고정비}$$

부보 고정비 = 총이익

- ※ 총이익 = (매출액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특정변동비용)
- ※ 특정변동비용은 약관에 의해 보험가입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 (가) 매출 및 매입에 따른 세금
 - (나) 매입대금 (할인부분은 공제함)
 - (다)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의 경우 변동되는 여타의 비용을 말함.

(3) 보상하는 손해

기업휴지위험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목적의 직접 손해로 인한 간접손실 또는 결과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접손실이라 함은 결국 매출 중단이나 감소로 인한 이익손실과 발생되는 비용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손해를 담보한다.

- (가) 기업휴지기간동안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

(나) 손해액 경감을 위한 특별비용

(다) 보험가입 총이익에 포함된 비용이라도 조업의 중단 또는 감소로 보상기간 중 지출이 중단되거나 감소·경감된 비용은 손해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보상되지 아니한다.

(라) 사고당시 누적된 완제품 재고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총이익의 감소가 지연될 경우 총이익의 감소지연부분은 보상하는 손해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는다.

(4)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매출액 감소 × 총이익률) + 매출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비용 - 사고로 이득을 얻은 비용

* 매출액 감소: 표준매출액 - 실제 매출액

* 표준매출액: 사고 직전 12개월로부터 보상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매출액을 표준으로, 사고가 없었을 경우 비즈니스의 추세 또는 기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실제 사고보상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

* 실제 매출액: 휴지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매출액

* 총이익률: 사고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총이익의 비율

* 연간 매출액: 피보험자의 사업이 정상상태로 복구된 날 또는 보상기간이 끝나는 날(먼저 발생한 것에 따름)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에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

* 특별비용: 매출액의 감소 또는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비용. 단 동 비용은 사

고의 결과로 보상기간 동안 발생된 금액이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피할 수 있었던 매출액의 감소액에 총이익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총이익률 × 연간 매출액

○ 보상기간: 사고 발생 시점에서 시작하여 최대로 보상하여 줄 수 있는 기간을 보험가입시에 미리 정하여 그 기간을 한도로 사고를 보상하여 줌.

○ 면책기간: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동 기간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치 않음. 재물보험의 자기부담액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기업휴지위험담보의 보상하는 손해는 전제조건으로서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재산종합위험담보 또는 기계위험담보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본래 기업휴지위험담보는 직접손해를 담보하는 재산종합위험담보 또는 기계위험담보의 특약형태에 불과

하기 때문에 기업휴지위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직접손해를 담보하는 기본약관인 재산종합위험담보 또는 기계위험담보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휴지위험담보에

서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직접손해를 담보하는 재산종합위험담보 또는 기계위험담보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와 동일한 것이며, 여기서 보험약관 규정상 아래와 같은 4개의 위험을 기업휴지위험담보에 추가되는 면책위험으로 하고 있다.

(가) 건물 또는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를 규제하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간의 명령으로 하는 손해

(나)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다)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축 또는 재조달과 관련하여 또는 조업의 재개 또는 계속과 관련하여 동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해 증권상에 명기된 구내에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증가된 손해

(라) 공사과정중의 작업에 기인한 결과적인 기업휴지손실. 여하한 경우에도 본 증권은 예정이익의 상실은 보상하지 아니함.

라.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담보

(1) 개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임차하거나 보호,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물이외의 제3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함.

(2) 가입대상

(가) 피보험자의 고지된 시설 및 피보험자의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이나 용역으로 인한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다)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3) 약관 구성

(4)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한도

패키지보험의 일반배상책임 담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한도도 개별보험으로서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내용과 유사하며 보상범위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와 같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개별보험인 영업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애, 재물손해,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타인의 신체장애에 대한 의료비 담보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이를 모두 담보 위험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비하여 패키지보험의 배상책임담보는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고처리 비용에 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개별보험인 영업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애, 재물손해,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타인의 신체장애에 대한 의료비 담보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보험회사가 방어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의 비용을 보상

(가) 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

(나) 신체장애배상책임담보가 적용되는 차량사용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필요한 보석보증보험료를 US \$250까지 보상함. 단, 생산물/완성작업배상책임담보(북미지역수출품)부문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이내의 보증금액에 대한 차압해제 보증보험료

(라)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 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한 방어에 협조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일당 US \$100 한도 내의 소득상실

(마)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송비용

(바) 회사가 지급하는 판결액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예비판결의 이자. 다만 회사가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통지 후의 예비판결의 이자는 보상하지 아니함.

(사) 판결 확정 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대한 이자

5. 패키지 보험의 특별약관

패키지 보험은 보통약관에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데 필요

한 제반 보험조건을 망라하고 있으나 이들 보통약관상의 보험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며 보통약관상의 일부 보험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관이 특별약관으로서 현재 패키지보험의 특별약관으로 인가·사용되고 있는 약관은 아래와 같다.

가. 공통보험 특별약관(I)

하나의 보험계약을 2 이상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할 때에 첨부한다.

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 소유자가 관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약관이며, 의무보험을 담보하는 것이다.

다. 외적 정보매체담보 특별약관

재산종합위험담보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외적 정보매체가입은 손해에 대하여 별도 설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

라. 내륙운송담보 특별약관

일정 지역 내에서 보험목적을 내륙 운송 중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약관으로서 1회 운송 당 보상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마. 공동보험 특별약관 (II)

공동보험특별약관(I)은 보험회사간의 공동보험을 말하는

데 비하여 공동보험특별약관(II)은 위험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공동 인수하는 의미에서의 공동보험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또는 재조달가액)의 일정비율 미만이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비례 보상하는 취지의 약관이다.

바. 동맹파업, 폭동, 소요특별약관

동 특약은 패키지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으로 하고 있는 전쟁위험 중 일부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그러나, 동 특약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조업중인 손해나 물수, 징발, 수용 및 과괴로 인한 손해와 합법 또는 불법에 불문하고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손해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6. 패키지보험 요율

패키지보험의 보험요율은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협정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한 자유요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패키지보험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천억 원 이하에 대하여는 국내공동재보험특약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율구득협정에 따라 대한재보험사로부터 구득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반면, 보험가입금액 1천억원 이상인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국내·외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한 요율을 적용한다.

요율 구득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담보

(1) 소재지, 업종·물건별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 또는 현재가액 명시)

(2)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 소재지별, 업종, 보험가입금액

(3) 생산품, 생산량

(4) 공장/건물의 도면

(5) 공정도

(6) 위험품 내역

(7) 소화설비 내역/ 배치도

(8) 현장사진

나. 제2부문, 기계위험담보

(1) 업종, 물건별 보험가입금액

(2) 기계명세

(3) 생산 Process Diagram

다.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담보

(1) 예상매출액 및 변동비 내역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보고서 포함)

(2) 보상기간 및 면책기간

(3) 공정상의 Bottleneck을 도면에 표기

라.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담보

(1) 보상한도액

(2) 업종내역

(3) 매출액 명세

(4) 연간 총입금액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시)

(5) 시설명세

(6) 주변 상황